

「유해·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」

일부개정령안

1. 개정이유

「유해·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」(이하 “취업제한규칙”이라 함)
[별표 1] 자격 등이 필요한 작업에 별목작업을 신설하고, 고압선 정전작업
규정 명확화 및 유해·위험작업에 필요한 자격 기준 현행화를 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가. 자격 등이 필요한 작업에 “별목작업” 신설(안 별표1)

- 자격 등이 필요한 작업에 “별목작업”을 신설하고, 해당 작업에 필요한 자격으로 「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산림기술자 중 산림경영기술자’를 요건으로 함

나. “고압선 정전작업 등” 조문정비 및 자격·면허 현행화(안 별표1)

- (조문정비) 제9호 “고압선 정전작업 및 활선작업”에서 작업명의 “고압선”과 작업범위 항목의 “고압”을 “고압 이상”으로 문구 정비
- (자격·면허 현행화) 현행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라 과거 폐지된 ‘가능사보’ 자격 및 통폐합이 이루어진 자격명 현행화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유해·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」 [별표 1]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: 신·구조문대비표(별첨)

유해·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유해·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제6호1) 중 “전기용접기능사, 특수용접기능사 및 가스용접기능사보”를 “피복아크용접기능사, 가스텅스텐아크용접기능사 및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기능사”로 하고, 같은 란 2) 중 “주조산업기사 및 금속제련산업기사”를 “주조산업기사”로 하며, 같은 표 제9호 작업명란 제9호 중 “고압선”을 “고압 이상의”로 하고, 같은 란 중 “고압”을 “고압 이상”으로 하며, 같은 란 나목 중 “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충전전로”를 “충전전로”로 하며, 같은 란 1) 중 “철도신호기능사 및 전기철도기능사”를 “철도전기신호기능사”로 하고, 같은 표 제10호1) 중 “철골구조물기능사보”를 “판금제관기능사”로 하며, 같은 란 제10호1) 중 “공업배관기능사보 이상 및 건축배관기능사보”를 “배관기능사”로 한다.

별표 1 제15호1) 중 “거푸집기능사보 또는 비계기능사보”를 “거푸집기능사 또는 비계기능사”로 하고, 같은 표 제16호1) 중 “거푸집기능사보”를 “거푸집기능사”로 하며, 같은 표 제17호1) 중 “비계기능사보”를 “비계기능사”로 하고, 같은 표 제18호1) 중 “잠수기능사보”를 “잠수기능사”로 하며, 같은 표 제20호1) 중 “양화장치운전기능사보”를 “양화장치운전기능사”로 하고, 같은 표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3. <u>별목작업(가슴높이 를 20센티미터 이상인 나무를 인력으로 베 는 작업에 한정한다)</u>		<u>「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 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림경영기술자의 자격</u>
3. 「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」에 따라 폐지된 자격으로 전기용접기능사, 특수용접기능사, 가스용접기능사보 및 금속제련산업기사는 제6호의 작업, 철도신호기능사 및 전기철도기능사는 제9호의 작업, 철골구조물기능사보, 공업배관기능사보 및 건축배관기능사보는 제10호에 각각 해당하는 작업, 거푸집기능사보는 제15호 및 제16호의 작업, 비계기능사보는 제15호 및 제17호의 작업, 잠수기능사보는 제18호의 작업, 양화장치운전기능사보는 제20호의 작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.		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1 제2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별목작업 유경험자에 대한 특례) 이 규칙 공포 후 1년이 경과하기 전일까지 별목업에 3개월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별목작업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별표 1 제2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목작업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.